성주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8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하에 성주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세입, 세출(안 제2조)
○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(안 제3조)
- 자금출납명령관 : 재무과장
- 수입금출납원 : 징수담당
- 지출원 : 경리담당

○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(안 제4조)
○ 전입(안 제5조)
- 특별회계 부족시 일반회계에서 전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성주군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안
나. 예산조치 :
다. 합의사항 :
라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·세출)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·부담금·일반회계의 전입금·보조금·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)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, 징수담당을 수입금출납원,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.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.

제5조(전입)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(잉여금)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.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